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81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 12. 0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 01. 15.

맨즈바닥

정 보 공 개 서

[맨즈바닥]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맨즈바닥]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087번길 18-2(안현동)					
대표번호	031-315-6642	팩스번호	-			
홈페이지	-	이메일	mansbadak@naver.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 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 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맨즈바닥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087번길 18-2(안현동)					돌)	
맨즈바닥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世 그 미ㅋ	개인사업자	2020. 9. 1.	박정환		031-315-6642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4	461-16-0159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맨즈바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맨즈바닥	
상 호	맨즈바닥 OO점	
서비스표	맨즈바닥	출원번호 : 4020220021523 등록번호 : 4020691260000
그밖의 서비스표	맨즈바닥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345,587	-	-	
2022년	22,985	6,934	16,051	682,557	79,454	80,251	
2023년	736,655	134,067	602,588	869,007	95,562	96,035	
자세한 재무상황은 [별첨 1]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근단어구	이금	한 역위	기간	기간 직위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정환	대표	2020. 9. ~ 현재	맨즈바닥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되었스/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맨즈바닥	출원 : 2022.02.04 등록 : 2023.08.18.	출원번호 : 4020220021523 등록번호 : 4020691260000	박정환	2033.08.18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맨즈바닥] 가맹사업 현황

1. [맨즈바닥]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준비 중 (직영점 시작일: 2020. 9. 1.)

2. [맨즈바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맨즈바닥	맨즈바닥	박정환	가맹사업 준비중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087번길 18-2(안현동)

3. [맨즈바닥]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u></u> 맨즈바닥	기타 서비스	가맹본부 : 인테리어 제반 업무			
	기다 시미스	가맹점사업자 : 인테리어 상담, 현장 실측,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맨즈바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	2022.12.3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_	-	-	-	-	-	_	_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	1	1	-	1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맨즈바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6. [맨즈바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맨즈바닥]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맨즈바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		·의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1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미끄
전체	-	-	-	-	_	_	-	-
서울	-	-	-	-	_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_	_	_	-	-
대전	-	-	-	_	_	_	-	-
울산	-	-	-	_	_	_	-	-
세종	-	-	-	_	_	-	-	-
경기	-	-	-	-	_	-	-	-
강원	-	-	-	_	_	_	-	-
충북	-	-	-	_	_	_	-	-
충남	-	-	-	_	_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_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맨즈바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맨즈바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자료는 확정 후 기재할 예정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맨즈바닥]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3년]에 [맨즈바닥]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丁世	구군 구간	기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포
합계		デー 班 (비ま水)	15,194	ाः (धस्या)	-	
광고	소계		15,194	गुर्ह (धस्त्रम्)	-	7 7- 17版 (비ま7月)
0 1	인터넷		-	-	-	
	기타		-	-	-	
판촉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가맹본부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가맹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12. 가맹사업보증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가맹본 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맨즈바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4,400	가맹계약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 한 정보 및 지원대가
교육비	9,900	체결 시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교육 진행 시 반환되지 않음
합계	14,300				A, B, C Type 동일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TE	A Type	В Туре	C Type	시티시킨	기 8 급시 답시크 비족시표	-1 -1.
계약이행보증금	10,000	30,000	50,0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정기납입경비 등 미지급 등, 계약종료 후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ā	비고		
TE	A Type	В Туре	С Туре	미포
가맹비	4,400	4,400	4,400	
교육비	9,900	9,900	9,9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	30,000	50,000	부가세 없음
합계	[24,300]	[44,300]	[64,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16,500	1,65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약 33㎡ 기준 (약 10평)
간판 등	협력업체 (미지정)	2,200	220	별도협의	주문제작 전 계약취소	변동될 수 있음
가구, 집기, 샘플북 등	협력업체 (미지정)	11,000	1,100	별도협의	주문제작 전 계약취소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합계		29,700	2,970			사업장 크기 또는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장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가맹점사업자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기, 음향, 화장실, 정화조, 인터넷 설치, 온수기, 파사드, 복합기, LED 디스플레이, 정수기 등 견적 외 품목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디자인 검수 대가로 도면제공비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포함), 디자인검수비 3.3㎡당 금삼십삼만원 (₩330,000/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까지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지원: 당사 점포개발팀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 최종 입지 선정

-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가맹희망자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수 있습니다.
-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해당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맨즈바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근귀. 전전, 구기세도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비고
		A type	총매출액 ¹⁾ 의 16.5%	매 익월 15일		
로열티	가맹본부	B type	총매출액 ¹⁾ 의 11%	(별도협의로	소멸성	
		C type	총매출액 ¹⁾ 의 5.5%	변경 가능)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별도 협의		시행 전 별도 개별 통지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별도 협의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시행업체 (미지정)		실비	주문 전	시행 이후 반환되 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 책사유 등을 고려하 여 협의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시행업체 (미지정)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 한 금액			시행 이후 반환되 지 않음	VII. 1.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기일의 다음날부 지급하는 날까지 연20%	개별 청구	금전지급의무 또 는 본 계약의 위반으 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지급 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1) &}quot;총매출액"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를 통하여 가맹본부에 결제된 매출액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결제한 상품판매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결제한 상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카드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 당사의 계속가맹금의 정산방법 및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
 - 1. 당사의 가맹사업의 특성상 귀하의 상담 및 실측을 통해 소비자가 결제하는 모든 금액은 당사의 매출액으로 먼저 산정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로열티 16.5%(부가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으로 매 익월 15일(별도협의로 변경 가능)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 귀하는 로열티를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하단의 표에 기재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옵션의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귀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야 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로 인하여 당사가 로열티 변경 옵션 금액을 반환할 경우, 당사는 귀하가 지급한 로열티 옵션 변경 금액 중 남은 잔여기간의 개월 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구분	로열티 옵션 (연간/ 원, 부가세 별도)
☐ A Type → C Type	25,000,000
☐ A Type → B Type	12,500,000
☐ B Type → C Type	12,500,00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 상담 내역 관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샘플북, 견적서 등(물품에서 변경)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고객 상담 내역 관리	고객과 진행한 실제 상담 내역 및 실측 정보를 조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기재한 시스템의 정보와 비교	수시	문의 : 당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 시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丁正	A Type	B Type	C Type	미포
가맹비	없음(양덕	읔(양도인의 잔여기간 인정)		
교육비	9,900			는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가맹점을 운영할 충분한
보증금 (부가세없음)	10,000	30,000	50,000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증(재무상황 등)을 통해 양도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신규계약으로 계약 시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78	금액			ul ¬
구분	A Type	B Type	C Type	비고
가맹비		4,400		
교육비		9,900		는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가맹점을 운영할 충분한
보증금 (부가세없음)	10,000	30,000	50,000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증(재무상황 등)을 통해 양도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과 맨즈바닥에서 부여한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사용(해당 시)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맨즈바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순번 품목(단위:1ea)		공급	단가	구분
군간	품목(단위:1ea)	상한	하한	丁 正
1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맨즈바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맨즈바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당사는 해딩	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가 [맨즈바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 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인테리어 상담, 인테리어 실측 등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 상담 및 공사 현장의 실측, 공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시스템 페이지에 고객이 확정한 인테리어 시공일정과 현장 실측 내역및 자재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은모두 가맹본부가 진행합니다. 또한 귀하는 고객과 인테리어 상담 또는 인테리어 실측을 진행할 경우,당사에서 제공하는 단가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맨즈바닥] 상담고객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 등	시행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고객 상담 및 현장 실측,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견적에 따라 다름	변동 시 홈페이지 등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고객과 인테리어 상담 또는 현장 실측을 진행할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단가표 및 샘플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맨즈바닥]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맨즈바닥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 동 기준 (단,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설정함)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기재

- ※ 대형마트, 쇼핑몰 등 외부와 단절되어 특정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독립상 권은 "특수상권"으로서,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귀하가 보장받는 권역에 따라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가맹점 유형에 따라 권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맨즈바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맨즈바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마	l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맨즈바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글 요구일 구 있는 권리가 외소 계약일도부터 10년간 무역합니다. 구제적인 열차는 다음과 달랍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2항 각호		
o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2항 각호		
o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3조 2항 각호		
o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3조 2항 각호		
o [맨즈바닥]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2항 각호		
o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3조 2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정된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2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은 후 1개월 내에 시정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맨즈바닥]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 영 하게 한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시스템에 고객 상담 또는 실측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 거나 2회 이상 누락하는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고객 상담, 실측, 계약서 작성 과정 진행 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1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5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2항 각호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4조2항 각호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4조2항 각호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 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2항 각호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2항 각호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2항 각호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2항 각호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2항 각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 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 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환매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점포의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점포개시를 위하여 지출한 초기 인테리어를 5년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당사에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가맹점에게 가맹계약서상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가맹점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 	당사 환매 신청 → 가치평가(감가상각 고려) → 환매 확정	문의 : 가맹본부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의 가맹점 운영역량검증(재무상황등)에 필요한자료를 제출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이건)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기간 제외)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본부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 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 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 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가능	가 맹점 사 업 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경영위탁	본부 승인시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위탁경영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10 영업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절차 완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맨즈바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맨즈바닥]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 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 지 → 완료	문의 :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맨즈바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 08:00 ~ 18:00 (별도협의 가능)	주 6일 이상 개점. 연속 2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7일 전 서면으로 사전승인 득한 후 휴업 가능)	문의 : 당사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사업장 청결	담당자 사업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본사 관리부	본사방침에
친절도	담당자 사업장 암행방문 → 상담 진행 → 가맹점사업자의 친절도 확인 → 완료	수시	본사 관리부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관리	담당자 사업장 방문 → 서비스 품질 확인→ 가맹점사업자 확인→ 완료	수시	본사 관리부	별도 공지함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맨즈바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담비율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지역본부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주들의 행사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 점모집광고			동의 →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의 50%이상 동의가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 가능함)	있는 경우 시행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 월별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의 7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기타 개별 행사	행	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승인한 시안 및 운영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비밀로 관리된 점포운영방법, 서비스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 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38조 (손해배상)

-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담보제공 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계약해지 · 종료 시 제35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당 금삼십만원(\(\precent{w}\)300,000)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36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하거나 경업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이 제2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판매채널을 위반하거나 제28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1일 당 금오만원(₩50,000)×잔여계약기간일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조건)

- ① 가맹점 오픈 후 최초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 1. 가맹비는 "을"이 본 계약에 의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2. 교육비는 "을"이 본계약에 의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소멸성이다. 교육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 3. 계약이행보증금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가맹사업의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 부한 금원으로 계약 종료 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후 반환된다.
 - 4. 로열티는 "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가맹점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하여 매월 "을"의 총매출액에서 정산되는 정기지급금으로서 반환되지 않는다.
-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반환되는 금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 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 ③ "갑"은 제38조의 위약벌 규정과는 별도로 "을"의 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동안 "갑"이 지원한 금액과 잔여계약기간동안 발 생할 수 있는 "갑"의 수익("갑"의 기대수익, 로열티 또는 기타 정기납입금의 미지급분 등), 그리고 해당 지 역에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추가 비용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10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홈페이지, 전화, SNS 등 문의 내역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10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106 ~ 10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94 ~ 91	[IV.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90	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 1.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D-89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87 ~ 85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88 ~ 4(주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o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o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 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o 간판교체 비용 o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o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o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o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롭게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협의하여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맨즈바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거나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마케팅	가맹점 블로그 개설 B 및 3개월 포트폴리오	B type	260만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혜택	개점 시부터	가맹점 블로그 개설 및 3개월	_
-1/11/0	내게당 및 3개월 포트놀디오 작성 작성		지원	3개월	간 포트폴리오 작성	
차어지의) 가구, 집기, 샘플북	B type	200만원(부가세별도) 지원	개점 시	가구, 집기, 샘플북	
ᆼᆸᄭᄺ	창업지원 창업 할인 지원		500만원(부가세별도) 지원		창업 할인 지원	-
시공 오더 할당 지원	본사 시공 오더 할당	B type, C type 선택 시		가맹계약 기간	본사 시공 오더 할당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	당사는 [맨즈바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최 <u></u>	초교육	시공, 실측, 참관 교육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필수		
운영	실무교육	매뉴얼 변경 등	실습교육	교육실시 7일 전 안내	필수		
교육	연수교육	영업방침 변경 등	집단강의	교육실시 7일 전 안내	필수		
CS교육		고객 서비스 및 상담	집단강의	교육실시 7일 전 안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시(필수)		
특별	렬교 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등	개별교육	교육실시 3일 전 안내	필수		

[※] 당사는 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방식 중 하나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ī	귀하가 [맨즈바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	티초교육	12주(주3일) 총 36일	9,900	필수		
운영	실무교육	별도협의	교육 실비	필수		
교육	연수교육	별도협의	교육 실비	필수		
CS교육 별도협의		교육 실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시(필수)			
	특별교육	별도협의	교육 실비	필수		

※ 최초교육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교육은 총 12주간 주당 3일씩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 현장 일정에 따라 실습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교육 내용	상세 설명
1		오리엔테이션: 취급 실내 바닥재 관련 내용 전달 및 실측과 견적의
2	바닥재 사업 관련 오리엔테이션 & 바닥재 시공 및 기타 공정 현장 참	기초적인 내용 설명)
3	한 마다세 시승 및 기다 중앙 연장 점 관 실습	시공 현장 참관 실습: 바닥재(피스, 시트) 시공 현장을 참관하여, 시공
4		공정의 진행 과정 및 현장별 특성 대해 이해한다.
5		
6	바닥재 시공 및 별도 공정 관련 시 공 현장 참관 실습 & 실측 및 상	시공 현장 참관 실습과 더불어, 시 공 현장의 실측 방법 및 소비자를
7	당 현장 참관 실습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과정을 파악 한다.
8		
9		시공 공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
10	바닥재 시공 및 별도 공정 관련 시 공 현장 참관 실습 & 실측 및 상 담 현장 참관 실습 & 견적 산출 및 시공 전후 관리 실습	축의 내용을 토대로 견적 산출 방 법을 익히고 및 시공 전후로 본사
11		에 전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확 인한다.
12		[전원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시까지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맨즈바닥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087번길 18-2(안현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4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69,007	당사는 직전연도 6개월 이상 영업한 직영점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